

# 자연과학대학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정 2020. 8. 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정부재정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책임자)** ① 정부재정지원사업의(이하 '사업'이라 한다) 기획 및 성과관리를 위해 자연과학대학 기획발전위원회 및 국제교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사업 수행의 총괄책임자는 자연과학대학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비 사용 실적 및 사업결과 보고
4.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 · 확산
5. 사업수행을 위한 인사 및 예산 집행 권한

③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고 학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업운영 부서인 자연과학대학 행정실에서는 학장의 지휘를 받아 사업 및 회계를 총괄 관리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① 사업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발전위원회 및 국제교류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과학대학 소속 전임교원, 조교, 연구원 등 소속 인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단, 전임교원은 소속 학과의 연구 · 강의가 가능한 겸무발령 교원도 포함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기획발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 의결 한다.

1. 정부재정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예산 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특수실험실습 및 장학금 지원 인원 선발에 관한 사항
5. 사업자체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⑤ 국제교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 의결 한다.

1. 국제교류사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국제교류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4조(회의)** ① 기획발전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의 회의는 학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학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사업비는 대학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② 이 사업은 예산 배분에 대한 학과간의 논란 방지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 충남대학교 「정부재정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자연과학대학 기획발전위원회가 정한 자체 기준 등에 따라 집행한다.

③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국가법령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에 따라 사업종료 후 5년 간 보존한다.

**제6조(운영세칙)**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획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2020. 8.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수행된 사업단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붙임-1]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정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장 대학혁신지원사업

**제2조(사업비 배정)**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1. 대학혁신지원사업 전체 예산의 30%는 자연과학대학 공동사업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70%는 각 학과에 배정한다. 단, 공동사업비 부분의 연구지원 및 코디네이터 활용을 위한 인건비는 별도로 구성한다.
2. 학과별 1차 예산 배정 기준은 실험실습비 배분비율과 자연과학대학 자체 성과평가등급별 배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3. 성과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의 최종 비율 및 등급별 배분비율은 기획발전위원회 성과평가회의에서 결정하며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S급   | A급   | B급   | C급  | F급  |
|-----|------|------|------|-----|-----|
| 비율  | 150% | 120% | 100% | 80% | 50% |

## 2장 정부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

**제3조 (자체성과관리)** 정부재정지원사업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 및 사업 관련 성과평가 및 환류를 목적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 한다.

1.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문서유통, 보고서, 성과자료 제작, 홍보 등의 과정에서 심벌/워드마크 조합 로고를 적극 활용한다.
2. 자체성과평가는 프로그램 및 학과 특성에 맞추어 사업계획 단계, 사업운영 단계, 사업성과 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
3. 사업계획 단계는 학생과 교수를 포함한 참여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 안내와 홍보 또는 사전타당성 보고서 등의 작성 유무에 대하여 평가하며, 기자재 구매 및 환경개선의 경우 역시 이 부분에 속한다.
4. 사업운영 단계는 사용예산, 추진일정, 관련규정 준수,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평가한다.
5. 사업성과 단계는 성과지표의 달성도, 만족도 설문조사를 포함한 성과증빙자료(교육과정 개선 전후 강의계획서, 멘토링 활동일지 및 결과보고서, 초청강연 참가자 명단 등) 확보 여부 등을 평가한다.
6. 자체성과점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예산을 배정한다.

**제4조 (보고의무)**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는 본 무 및 학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 추진 현황, 실적 및 성과, 사업비 집행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수행된 사업단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타)**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국립대학육성사업」 세칙을 포함한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연과학대학 학장과 기획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위원회의 위원장과 자연과학대학 학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